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03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 · 박정현 · 윤준병
김태선 · 전용기 · 이정현
김남근 · 이광희 · 김현정
이용선 · 김상욱 · 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모욕적 언행, 외모·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는 행위 등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절차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금지) ① 구인자 및 면접관은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모욕, 폭언, 위협, 보복성 질문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면접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의 노조활동 경력,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관해 질문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2. 구직자의 신체, 용모, 병력 등에 관해 질문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3. 구직자에게 채용과 무관한 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4. 구직자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 및 모욕적 발언, 위협적 언행 등의 행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구인자는 면접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면접관 사전 교육
2. 면접 질문의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제공

3. 면접 과정의 기록 및 보관

- ③ 구직자는 면접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 ②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면접괴롭힘 행위를 한 구인자 또는 면접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과정에서의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4(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금지) ① 구인자 및 면접관은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모욕, 폭언, 위협, 보복성 질문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면접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구직자의 노조활동 경력,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관해 질문하거나 비난하는 행위</u> <u>2. 구직자의 신체, 용모, 병력 등에 관해 질문하거나 비난하는 행위</u> <u>3. 구직자에게 채용과 무관한 사항을 강요하는 행위</u> <u>4. 구직자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 및 모욕적 발언, 위협적 언행 등의 행위</u> <u>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행위</u> <u>② 구인자는 면접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면접관 사전 교육</u> <u>2. 면접 질문의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제공</u> <u>3. 면접 과정의 기록 및 보관</u> <u>③ 구직자는 면접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u>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면접괴롭힘 행위를 한 구인자 또는 면접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u> · <u>③</u> (생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⑤</u> -----<u>제4항까지에</u>----- ----- ----- -----.